

강원특별자치도

주의·시정

제 목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 소방○ ○○○

② ○○○○ ○○○○○○○○○(前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물품관리부서로서 체인톱·봄베 등 화재진압장비와 유압구조장비·마취총·심장충격기 등 구조구급장비, 사무실 집기비품 등 물품에 대한 취득·수급관리·재물조사·불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총 4,035점을 물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정수관리대상물품 수급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57조·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5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¹⁾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정수를 정한 물품으로 하며,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상 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 소방장비회계과에서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소방서 및 대응단 등에 알리고²⁾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물품수급관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의 관리·운영을 철저토록 시달하였다.

물품 재물조사 및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제6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증감이 발견되더라도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1)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함

2) 알림 문서

1. 소방장비회계과-10897(2021.8.20.)호 「2022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알림」
2. 소방장비회계과-10291(2022.8.11.)호 「2023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알림」
3. 소방장비회계과-4995(2023.9.11.)호 「2024년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알림」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5조·제76조·제78조에 따르면,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 매각, 양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8조에 따르면, 소방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고,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⁴⁾이 정할 수 있으며,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 경과 및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등에 대하여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하여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그리고 「같은 조례」 제16조·제17조·제18조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4)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별표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취득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하여야 하고, 불용결정을 한 물품은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여 매각처분(연 2회 이상)을 하여야 하며,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⁵⁾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의 입회 하에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 소방장비회계과에서는 매년 정기재물조사 계획과 지침을 통해⁶⁾ 소방서 자체 관할 재물조사반원을 편성하여 물품현행화 및 물품보관장소를 입력하고 관리·운영을 철저토록 시달하였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잉여품이나 과장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어야 했다.

그리고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물품 보유 현황과 실제 존재하는 물품의 현황을 비교하여 물품보관장소를 입력하여야 했고, 연 1회 이상 소방장비 불용심의회를 개최하여 불용결정된 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하여 불용처분을 하여야 했으며,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연장사용이나, 내용연수 미경과 장비 중 훼손 등 장비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수선된 장비의 재사용 결정을 통해 소방장비 보유수량, 재고품의 확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보유 물품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5) 강원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소방장비회계과-2979(2023.8.2.)호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정기재물조사 계획 알림」

가. 정수관리대상물품 수급관리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정수관리대상물품의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필요한 물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으나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시달한 계획 문서를 접수하고도 2023년도 및 2024년도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정수관리대상물품 1점(4,405천 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에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하였다.

나. 물품 재물조사 및 불용처분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과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물품관리를 하여야했으나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운영 중인 4,035점 중 1,464점의 물품보관장소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관리를 하였다.

다. 내용연수 10년 경과 물품관리 소홀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물품 1,221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82점은 현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 중 현장활동에 필요한 구조용조명등, 화학물질보호복, 심장충격기 등의 구조·구급장비에 대하여는 분실 및 망실에 특별히 주의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했음에도 감사일 현재 현물이 없는 채로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라.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내용연수의 경과, 노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물품을 불용처분하고자 물품 불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그 후속 조치인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실시하지 않은 채 불용물품 242점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방치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8.부터 2023. 3. 1.까지 ○○○○○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한 2023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관리운영 중인 4,035점 중 1,464점에 대한 물품보관장소 입력을 하지 않았으며,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물품 1,221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산소발생공기정화기·화학물질보호복 등 282점은 현물이 없는 채로 물품관리를 하였고, 2022. 7. 26.과 2022. 12. 7. 불용결정심의회를 개최하고도 그 후속조치인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화복·다목적고온절단기 등 91점을 창고에 방치하였다.

소방☆ ☆☆☆은 2023. 3. 2.부터 2023. 8. 20.까지 ○○○○○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관리운영 중인 4,035점 중 1,464점에 대한 물품보관장소 입력을 하지 않았고,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물품 1,221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산소발생공기정화기·화학물질보호복 등 282점은 현물이 없는 채로 물품관리를 하였으며, 2023. 6. 28.과 2023. 8. 1. 불용결정심의회를 개최하고도 그 후속조치인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유압전개기·안전

헬멧 등 115점을 창고에 방치하였다.

소방♡♡♡♡는 2023. 8. 21.부터 현재까지 ○○○○○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한 2024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관리운영 중인 4,035점 중 1,464점에 대한 물품보관장소 입력을 하지 않았으며,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물품 1,221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산소발생공기정화기·화학물질보호복 등 282점은 현물이 없는 채로 물품관리를 하였고, 2023. 11. 6. 불용결정심의회를 개최하고도 그 후속조치인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지 않은 채 라이트라인 등 36점을 창고에 방치하였다.

소방♣♣♣♣은 2022. 7. 11.부터 2024. 1. 2.까지 ○○○○○에서 예산장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수관리대상물품의 효율적 관리 및 예산절감을 위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과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리하여야 했지만, 물품관리시스템에서 관리운영 중인 4,035점 중 1,464점에 대한 물품보관장소 입력을 하지 않았으며,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난 물품 1,221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산소발생공기정화기·화학물질보호복 등 282점은 현물이 없는 채로 물품관리를 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물품 불용결정심의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도 그 후속조치인 불용결정과 불용처분을 하지 않은 채 심의완료된 방화복·다목적고온절단기 등 242점을 창고에 방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소방장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

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정수 미승인 물품 1점(4,405천 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에 정수 승인을 요청하시고, 물품관리시스템 물품보관장소가 미입력된 1,464점에 대한 현재 보관장소를 입력하시기 바라며, 물품관리시스템에만 존재하고 현물이 없는 282점은 불용처분심의회를 거쳐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하시고, 불용처분심의회 이후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242점은 불용결정 및 불용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물품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은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의·시정

제 목 계약관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 소방○ ○○○○

② ○○○○ ○○○○○○○○○○(前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청사 신·증축,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21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3건의 계약업무를 수행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20조·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고⁷⁾,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며,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 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국민연금법」 제95조의2·「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르면, 4대 보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사실을 증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하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2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훈령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하는 장부와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증거서류가 출력물 등인 경우에는 지출증거서

7) 「민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고 표지 다음 장에 증거서류 목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시행⁸⁾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표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특례 내용

| | 한시적 특례 적용 주요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
|---|---|
| 수의계약 | 1회 유찰 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 |
| 보증금 |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공사이행보증금(40%→20%) 인하 |
| 소요기간 | 검사기간(14일→7일) 및 대가지급기간(5일→3일) 단축 |
| [시행 2024.7.1.][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2024.6.25.)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

※ 자료: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 요약 발췌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청렴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했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2부 만들어 당사자가 기명 날인 한 후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의 증거로서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했다.

또한 계약업체로부터 대금청구를 받았을 때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했고, 지출증빙서류를 규정에 맞게 편철하여 보존 관리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8) 최초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5호(2020.7.14.), 현재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0호(2024.6.25.)

가. 표준계약서 작성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소방서(본서) ○○○○○공사 및 ○○○○○○○ ○○○○○○○ ○○공사와 관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무관이 명시된 계약서에 ○○소방서 재무관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서장 직인을 사용하였으며, 계약서 2부를 만들어 서로 간인을 찍고 계약의 내용을 요약하는 의미로 계약서 1부는 계약상대자에게 주고 나머지 1부는 ○○소방서에서 보관하여야 하지만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한시적 고시를 시행한 계약보증금률⁹⁾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 10%, 15%를 적용하였으며,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5를 적용해야하지만 0.13%를 적용하였다.

나.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금지급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2023년에는 총 69건의 계약지출을 하였는데 계약관련서류, 지출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바 지출결의서 재무관 직인을 누락하였고,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직인을 누락하였으며,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이 넘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지출하였고, 4대보험 완납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지출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9)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023.3.7.)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1항제1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 시행하고, 한시적 고시 적용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절반금액인 1000분의 75에서 100분의 5로 적용함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8.부터 2023. 3. 1.까지 ○○○○○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방서(본서) ○○○ ○○○○○○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재무관이 명시된 계약서에 ○○소방서 재무관 직인을 찍지 않았으며, 2023년 총 계약건수 69건 중 1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시적 고시 시행으로 계약보증금을 공사는 7.5%, 물품·용역은 5%를 적용해야하지만 15건 중 13건을 10%로 적용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3. 3. 2.부터 2023. 8. 20.까지 ○○○○○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 ○○○○○○ ○○공사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보증금을 5%로 적용하여야 하지만 15%로 적용하였고, 2023년 총 계약건수 69건 중 37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결의서의 재무관 직인 누락 5건,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직인 누락 20건,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넘은 자료 8건 등 계약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4. 1. 2.까지 ○○○○○에서 예산장비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했지만 2023년 총 69건의 계약 중 지출결의서 재무관직인 누락 7건, 지출결의서 검수결과 미첨부 3건, 4대보험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넘은 자료 17건 등 계약업무를 규정에 맞지 않게 하였음에도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

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영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지출결의서 상 재무관직인 누락 건은 직인 날인하시고, 청렴서약서·수의계약각서 날짜 미기입건은 날짜를 기입하시기 바라며, 검수결과 미첨부건은 검수결과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시고, 지출결의서를 규정에 맞게 편철하여 보존관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계약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학교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삼척소방서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의·시정

제 목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등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관 련 자
-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②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④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⑤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⑥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⑦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⑧ ○○소방서 ○○○○○○○○○○ 소방○ ○○○
 - ⑨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총 291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소방용수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 합 계 | 지상식 | 지하식 | 승하강식 | 급수탑 | 자연수리 | 비상소화장치 |
|-----|-----|-----|-----|------|-----|------|--------|
| | 291 | 246 | - | - | - | - | 45 |

※ 자료: ○○소방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한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은 즉시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고장 등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를 하여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노면표시는 아래 [표2]와 같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면표시

| 일련 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 516의 3 |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 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
| 516의 4 | 소방시설 주변 정·주차 금지표시 (연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 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

※ 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재구성

따라서 ○○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담당부서에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야 하고, 대체 소방용수를 지정하여 고장발생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했으며,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수리하여 항상 가용상태로 유지·관리하였어야 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별 담당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어야 하고, 담당부서는 시·군 관련부서와 정기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방용수시설의 보강, 관리전환, 표지설치 등 상호 업무 협조 사항을 교류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시설의 법령 및 설치기준 개정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고장 소방용수시설 후속조치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총 15개소의 고장 소방용수시설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고장이 발생한 소방용수시설 후속 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는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5개소에 대해 고장발생 사실을 2일에서 4일까지 지연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고장발생 사실을 보고 받은 담당부서는 즉시 대체소화전 지정·알림 등을 통하여 고장발생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려야 했음에도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10개소에 대해 고장발생 사실을 1일에서 8일까지 지연하였다.

또한 소방용수시설 고장발생 사실을 보고 받은 담당부서는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 요구를 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수리하여야 했으나 고장발생 소방용수시설 3개소에 대해 21일에서 82일까지 지연하여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 요청하였다.

나.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소홀

감사 대상 기간 중 소방용수시설(지상식소화전 246개소, 비상소화장치 45개소)

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소방서(○○○○○○○○○○)는 도로 교통법에서 규정한 소방용수시설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었음에도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7. 5.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1. 10. 11. 배수불량으로 고장이 발생한 ○○000호 소화전에 대하여 2021. 10. 13.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 고장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는 2021. 1. 2.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1. 10. 11. 개방밸브 작동 불량으로 고장이 발생한 ○○000호 소화전에 대하여 2021. 10. 13.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 고장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2. 4. 17. 스피들 개폐불량으로 고장이 발생한 ○○000호 소화전에 대하여 2022. 4. 20.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 고장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3. 1. 15.부터 2024. 7. 3.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3. 1. 15. 소화전 파손으로 고장이 발생한 ○○000호 소화

전에 대하여 2023. 1. 18.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 고장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3. 5. 1.부터 2023. 8. 20.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2023. 6. 18. 스피들 개폐불량으로 고장이 발생한 ○○000호 소화전에 대하여 2023. 6. 22. 고장발생 보고를 하여 고장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1. 2. 25.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2021. 7. 26. 스피들 개폐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1. 7. 27. 대체소화전 지정·알림을 하였고, 2022. 1. 11. 배수불량(동파)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2. 1. 12. 대체소화전 지정·알림을 하였으며, 2022. 5. 25. 누수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2. 5. 26. 대체소화전 지정·알림을 하여 고장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2. 7. 11.부터 2023. 7. 23.까지 ○○소방서 ○○○○○○에 근무하면서, 2022. 8. 26. 스피들 개폐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2. 8. 29. 대체소화전 지정·알림을 하였고, 2022. 11. 14. 스피들 개폐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2. 11. 17. 대체소화전 지정·알림을 하였으며, 2023. 1. 18. 소화전 파손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3. 1. 19. 대체소화전 지정·알림을 하였고, 2023. 3. 22. 스피들 개폐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3. 3. 30. 대체소화전 지정·알림 및 고장발생 보고일로부터 21일을 지연하여 2023. 4. 12.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며, 2023. 4. 29. 스피들 개폐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3. 5. 3. 대체소화전 지정·알림을 하였고, 2023. 6. 22. 개방밸브 작동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3. 6. 23. 대체소화전 지정·알림 및 고장발생 보고일로부터 82일을 지연하여 2023. 9. 12.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청을 하였으며, 2023. 7. 19. 스피들 개폐 불량으로 고장발생 보고된 ○○000호 소화전에 대해 2023. 7. 21. 대체소화전 지정·알림 및 고장발생 보고일로부터 55일을 지연하여 2023. 9. 12.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리요청을 하는 등 고장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4. 1. 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000호 소화전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 선이 설치되었음에도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는 2023. 5.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 ○○○에 근무하면서, ○○000호 소화전 인근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 선이 설치되었음에도 담당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부적절하게 주차구획선이 설치되어 있는 ○○000호, ○○000호 소화전에 대하여 지자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정비하시고, 아울러 소속 직원에게 관련 규정 및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 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고·주의·시정

제 목 ○○○ 복합건축물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검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② ○○소방서 ○○○○○ 소방○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④ ○○소방서 ○○○○○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화재와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고,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건축허가신청서 등¹⁰⁾을

-
- 10)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나목2)·4)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가. 건축물 설계도서
 - 1) 건축물 개요 및 배치도
 - 2) 주단면도 및 입면도(立面圖: 물체를 정면에서 본 대로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층별 평면도(용도별 기준층 평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4) 방화구획도(창호도를 포함한다)
 - 5) 실내·실외 마감재료표
 - 6)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도 및 부서 공간 위치도(조경계획을 포함한다)
 - 나. 소방시설 설계도서
 - 1) 소방시설(기계·전기 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2) 소방시설별 층별 평면도
 - 3) 실내장식물 방염대상물품 설치 계획(「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제외한다)
 - 4)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계통도 및 기준층 평면도(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한다)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해야 하고,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스프링클러 신설 등의 소방시설공사¹¹⁾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대상¹²⁾에 대하여 공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1) 1.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1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 및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소방시설등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등의 업무¹³⁾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조기반응형 헤드¹⁴⁾"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가.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13)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4) RTI(반응시간지수) 값이 50 이하인 스프링클러 헤드 ↔ 표준반응형헤드의 RTI 값은 80초과 350 이하임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 감리완공 결과보고서 제출 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시공·감리가 이루어졌는지 설계도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건축허가 동의 등을 하였어야 했다.

한편 ○○소방서(○○○○○○)에서는 ○○○○○○○○ 복합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동의 후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신고를 거쳐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관련 감사기간 중 상기 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적합하게 완공되었는지 소방시설 설계도서 및 현장확인 결과, ○○○○○○동의 노유자시설에 조기반응형 헤드가 아닌 표준반응형 헤드 설치 등을 포함한 소방시설 부적법 사항 2건이 확인되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건축허가 동의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 ○○○○○○○○○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계되었고, 소방시설설계업체인 ○○○○○○○에서 건물 내 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의 거실에 조기반응형이 아닌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로 설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2021. 2. 10. 건축허가 동의하였다.

나. 소방시설공사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부적정

○○○○○○○○○ 복합시설의 소방시설공사업체 및 소방시설감리업체는 소방시설 시공 및 공사감리를 통하여 2024. 3. 5.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및 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업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거실에 조기반응형이 아닌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로 부적정하게 시공·감리하였음에도, ○○소방서(○○○○○)에서는 이에 대한 감리결과보고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2024. 3. 6.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은 2021. 1. 2.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에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의 노유자시설 거실에 조기반응형이 아닌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계되었음에도 부적정하게 건축허가 동의하였다.

소방♣♣♣♣는 2024. 1. 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면서, ○○○○○○○○ 복합시설의 ○○○○○○○○○의 노유자시설 거실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적정하게 시공·감리되었음에도 부적정하게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은 2020. 7. 2.부터 2023. 7. 9.까지 ○○소방서 ○○○○○에서

예방총괄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의 노유자시설 거실에 조기반응형이 아닌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는 2023. 7. 1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서 ○○○○○○에서 예방총괄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 복합시설의 ○○○○○○ ○○의 노유자시설 거실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적정하게 시공·감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주의] 위 관련자 소방◇ ◇◇◇를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시정] ○○○○○○○○ ○○○○○○○○○의 소방시설(조기반응형헤드 스프링클러설비)을 부당하게 설계·시공·감리한 업체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입건15), 행정처분16)) 하시고, 위 건물에 조기반응형 스

15)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및 4호~7호 생략)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프린클러 헤드와 비상방송설비(예비전원 기동 불량)를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허가 동의 등 민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
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④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
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
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
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다. ○○○○○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호~8호 및 10호~26호 생략)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
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경고·주의·시정

제 목 제조소등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사용중지 신고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관 련 자
-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前 소방○) ○○
 - ② ○○소방서 ○○○○○○○○○○ 소방○ ○○○
 - ③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④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前 소방○) ○○○
 - ⑤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 ⑥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교(前 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 ○○○○○○○○○)에서는 총 147개소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허가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

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¹⁷⁾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제39조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¹⁸⁾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¹⁹⁾를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서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에서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이전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한 날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재선임 및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

17)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별표5]

|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
| 1.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모든 위험물 |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18) 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19) 1. 탱크·배관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 등의 제거

2.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3.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4. 그 밖에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어야 했고, 제조소등의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안전조치 및 사용중지 하려는 날의 14일 전 신고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 옥내탱크저장소를 포함한 2개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접수하면서 신고기한 14일을 초과하여 신고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았다.

나.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소방서(○○○○○○)에서는 ○○○○○○ 옥내탱크저장소를 포함한 2개소의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를 최대 14일에서 최소 9일을 지연 신고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않았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 ○○○에서 근무하면서, ○○○○○○의 관계인이 2021. 7. 1. 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2021. 7. 21. 신고하였음에도 선임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소방♡ ♡♡♡은 2022. 1. 17.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 ○○○에서 근무하면서, ○○시 ○○○○○○의 관계인이 2022. 3. 1. 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2022. 3. 31. 신고하였음에도 선임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

분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소방♣ ♣♣♣은 2021. 1. 2.부터 2022. 1. 16.까지 ○○소방서 ○○○○○에서 위험물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 관계인이 2021. 11. 19. 사용중지 당일 신고 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소방◇ ◇◇◇는 2022. 1. 17.부터 2024. 1. 2.까지 ○○소방서 ○○○○○에서 위험물 업무를 수행하면서, ○○○○○○ ○○○○○○○○○의 관계인이 2022. 6. 18. 사용중지 하겠다며 2022. 6. 13. 신고 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소방◎ ◎◎◎은 2021. 7. 12.부터 2022. 7. 10.까지 ○○소방서 ○○○○○○ ○○○ 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 관계인이 2021. 7. 1. 안전관리자 선임 후 2021. 7. 21. 신고하였음에도 신고 지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소방△ △△은 2020. 7. 2.부터 2023. 7. 9.까지 ○○소방서 ○○○○○ 예방총괄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 관계인이 2021. 11. 19. 사용중지 당일 신고 하였고, ○○○○○○ ○○○○○○○○○의 관계인이 2022. 6. 18. 사용중지 하겠다며 2022. 6. 13. 신고 하였음에도 신고 지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3조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²⁰⁾에 따라 ○○○○○○와 ○○시 ○○○○○○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신고 지연 및 ○○○○○○와 ○○○○○○ ○○○○○○○○의 제조소등 사용중지 신고 지연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조치하시고, 아울러 과 및 안전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전보인사·교육훈련·성과상여금 지급·표창·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2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4호, 5의2~7의2 생략)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은

-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장은

- ① [주의] 위 관련자 소방◎ ◎◎을 「주의」 처분하시고, 위 당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